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모 자 보 건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 강화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을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의 소득기준 삭제(안 제17조의7제3항)

- 1) 2021년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에서 백분의 15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,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	
연 락 처	044-202-3227